

19세기 사헌부 犯禁 단속의 성격

박 경

- 조선시대 사헌부의 사법 기관으로서의 역할
- 조선 후기 出禁 규제의 추이
- 19세기 사헌부 범금 단속의 양상과 쟁점

사헌부의 기본 역할

: 백관을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역할

- 서거정은 「사헌부 제명기(題名記)」 : 사헌부의 기원을 주례의 '어사(御使)'에서 찾음. 역사적으로는 한에서 어사대부, 중승, 어사 등의 관리를 배치하여 '어사대(御史臺)', 혹은 '난대(蘭臺)'라고 불리웠던 관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함. ➡ 관서, 국가에서 편찬한 『司憲府掌攷』, 『증보문헌비고』에서도 인용됨.
- 1868년(고종 5) 왕명에 따라 국가 의례에서의 사헌부의 감찰을 강화하도록 제정한 규정의 첫 머리에는 "상대아문(霜臺衙門)은 기강을 진작시키고 풍속을 바르게 하기 위해 6조와 각 사를 감찰하는 직책이다."는 사헌부의 역할에 대해 전제
- 조선시대 사헌부에서 단독으로 시정을 논집하기도 했고, 양사 합계, 삼사 합계 등을 통해 언관의 역할을 활발히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찰의 역할 : "대관, 간관은 비록 일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다. 대관은 風敎를 규찰하고 간관은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는다."

법전에 규정된 사헌부의 역할

시정(時政)을 논집(論執)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조의(朝儀)를 정연하게 하고, 창름(倉廩)을 검찰한다”)

- 『경국대전』 이후 () 안은 『司憲府掌攷』(19세기 후반 편찬)에 추가된 내용
- 추가된 내용이 관사의 업무를 감찰하는 사안이고, 조선 전기부터 사헌부의 업무였음을 감안하면, 이 내용이 추가된 이유는 조선 후기 혹은 19세기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수 있음.

사법 기관으로서의 사헌부의 역할

- **관원 감찰** : 관원들의 비위, 불법에 대한 기소
- **관사 감찰**
 - 각 담당 관사의 행정 처분을 재심
 - 관사의 처분으로 인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재심을 통해 풀어주는 역할
- **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일** : 금령을 어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出禁)
 - ☞ 17세기 말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출금 규정을 정비하는 법들이 제정됨.
- **推鞠 참여**

조선시대 사헌부의 出禁을 둘러싼 논쟁



국가 기강 진작 : 권
세, 민원 등으로 금령을 어
기는 자를 단속하기 어렵
다.

出禁의 남용: 금령을
빙자한 관련 관사 관원이
나 禁吏의 탐오함. 불공정
한 단속. 법외의 단속

17세기 말~18세기 출금 규제

- 1684년(숙종 10) 昏夜 출금 금지
- 1688년(숙종 14) 금제 절목: 禁吏를 내보내는 절차에 대한 규정. 3사의 금제 항목 지정

1) 금제 절차

- ✓ 禁牌를 만들고 금패에 禁目을 새겨 금리에게 지급
- ✓ 출금 한도 지정 : 형조, 한성부는 1달 안에 6차례 출금. 한 차례당 2 조항을 넘지 못함. / 사헌부는 비록 한도를 두지 않으나 전처럼 절제 없는 폐단을 없게 할 것
- ✓ 출금 절차 : 출금 좌기는 首堂上. 형조, 한성부는 낭청이 사헌부는 감찰 중 오래 재임한 사람이 관장. 출입의 수는 장관을 거치도록 함.
- ✓ 出牌 규정을 어기거나 다른 관사에서 금해야 하는데 패를 내주거나 출패 수를 어기면 사헌부에서 감찰
- ✓ 각 향의 금제 조목은 관장하는 사헌부 외에는 임의로 다른 관사에 출금하게 할 수 없음.

17세기 말~18세기 출금 규제

2) 금제 항목

- 3사 출금 가능 항목 : 소, 말 도살, 경성 5리내 神祀
 - 형조 : 난전, 말을 될 때 농간 부리는 것은 평시서에서 잡아서 보내면 형조에서 처결, 紙鞋
 - 한성부 : 別松 벌목, 호패를 차지 않은 자, 성내에서 서인(庶人)으로 말을 타는 자 단속
 - 사헌부 : 분경, 풍속을 어지럽히는 행위(분수에 어긋나는 사치 등 다수), 신속 관원 침학, 성내에서 서인(庶人)으로 말을 타는 자, 성내에서 말 달리는 것 단속
- 1691년(숙종 17) 사헌부 贖錢 관리를 철저히 하고, 牌에 의거하여 출금하도록 함.
 - 1694년(숙종 20) 禁條 외에 禁亂을 금지
 - 1732년(영조 8) 在家 출금 금지

19세기의 출금 규제

- 1832년(순조 32) 재가 출금 규제, 출금 관련 사헌부 인신 관리 철저 등 과도한 출금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절목으로 제정
- 1834년(순조 34) 좌의정 심상규의 계문에 의해 풍문을 근거로 감찰 각자가 출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찰 출패를 금단하고, 이를 대사헌이 주관하도록 함.

19세기 범금 규제에서의 사헌부의 역할

- 사헌부, 한성부, 형조를 3사라고 하는데, 모두 출금 아문이고, 사헌부가上司가 된다. 그러므로 사헌부에서 잡은 것을 형조나 한성부에서 감히 다시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에서 잡은 것을 물론하고, 또한 推治할 수 있다. 그리고 혹 금령을 어긴 사람을 잡아 取招한 후에 형조에 이송하여 照律하여 決罪한다.

『司憲府掌攷』

- 금령 단속, 범금자 조사를 주관하는 기관. 그러나 마지막 조율과 결죄는 형조 → 사헌부에서 장을 치거나 배소에 보내거나 속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司憲府掌攷』의 출금 절차에 관한 내용 초출

- 무릇 원래 정해진 규정 외에 만약 마땅히 금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혹 때에 임하여 廟堂에서 의논하여 계하한 후에 출금하여 수속한다.
 - 감찰 1원이 궐하에 가서 分臺를 기다려 대각(?)에 가면 대사헌이 분대하여 출금한다. 대사헌이 궐 밖에서 行公할 때에는 그가 나가있는 밖 公廨에서 분대 출금한다.
 - 茶時 감찰 분대 때에도 일체 출금할 수 있다. 감찰 3원이 합좌하면 출금할 수 있다.
 - 출금시 패가 있는 것은 출패하고, 패가 없는 것은 紙牌를 성급한다. ➡ 『대전통편』의 지패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지패를 사용함.
- ✓ 19세기 범금 단속 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대기자료와 등록을 통해 더 검토해야 함.